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5. 8. 21 선고 2015가단10932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 직장주택조합

변론 종결 2015. 7. 17.

판결 선고 2015. 8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. 3. 17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박미리

별지